

被占領地 土地改革에 관한 研究*

— 報恩郡 懷南面 事例

趙錫坤**

- | | |
|--------------------------------------|--------------------------------------|
| I. 머리말 | IV. 북한 토지개혁의 農地分與와 남한 농지 개혁의 農地分配 비교 |
| II. 한국전쟁기 북한의 被占領地 土地改革과 사례연구 지역의 특성 | V. 맺음말 |
| III. 두 번의 土地·農地改革 실시과정과 그 결과 |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점령했던 보은군 회남면에서 진행된 북한 토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을 분석한다. 먼저 1949년 말 현재 경지 5,937필지 중에서 최종 분배된 농지는 404필지로 전체 경지의 6.8%에 지나지 않았다. 전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75필지(18.6%), 4.3정보(17.0%)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회남면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8월 11일 보은군 토지개혁 실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18일에는 173개의 리 단위에서 모두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리 농민총회에서 확정된 토지분여안은 29일 군농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조직된 토지개혁 관련 위원회는 모두 554개로, 총 3,188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각종 선전·선동 행사에 참여한 회남면민은 연인원 6,215명으로 당시 면 인구보다 많았다. 농촌위원회 위원은 남한 농지개혁 농지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경제적 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 A2A01025284).

**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은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및 『토지분여증명서』를 연결하여 필지별 경작자 정보를 담고 있는 총 6,166필지의 경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중 3,529필지(57.2%)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소유지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경지의 60.5%인 555.3정보였다. 남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필지 중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여대상 토지가 된 것은 358필지였다. 이중 43.3%의 필지에는 수배농가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7.3%의 필지에서는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남한 농지개혁에서 원래 수배농가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남한 農地改革, 被占領地 土地改革, 轉賣買, 受配農家, 農村委員會

I.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기 북한에게 점령당한 지역(이하 ‘被占領地’라 한다)에서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을 남한 농지개혁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남한 농지개혁에 관해서는 동리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지만, 피점령지의 토지개혁에 관해서 개별 농가별 분배상황을 알 수 있는 농가별 자료¹⁾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흔치 않다. 그것은 관련 자료가 없었기 때문인데, 2000년대에 들어와 공개된 미군 鹵獲文書²⁾에서 安寧里(현재 화성시)와 報恩郡 懷南面의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중 안녕리에 대해서는 오보경의 사례 연구가 있는데,³⁾ 이 연구는 회남면에서 진행된 북한의 피점령지 토지개혁을 남한 농지개혁과 함께 살펴보려 한다.⁴⁾

남한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장상환과 김성호의 연구⁵⁾를 분기점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농지개혁에

- 1) 농지개혁(북한의 경우는 토지개혁)에 관한 농가별 자료란 필지별 분배 및 상환정보를 담고 있는 일련의 장부를 지칭한다. 남한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등이 대표적 자료이며, 피점령지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농가별기본조사서, 『토지분여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에 대해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불렀으며, 남한은 농지개혁이라 불렀다.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실시한 것은 토지개혁, 남한이 실시한 것은 농지개혁이라 칭한다.
- 2) ‘노획문서’란 북한이 작성한 자료로 미군이 노획한 문서철을 말하는데, <http://www.dlibrary.go.kr/>의 해외수집기록물 원문 자료를 말한다.
- 3) 오보경,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역 토지개혁-경기도 화성군 안용면 안녕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3, 131~172면.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북한 토지개혁은 분여기준을 노동력에 근거한 점수제를 채택한 점이 특징적이다. 안녕리의 경우 1점당 분배토지면적은 729평, 1호당 면적은 2,260평이었다. 같은 논문 156면. 점수제를 적용한 것은 노동능력에 따른 배분으로 소유규모의 균등화에는 유리하지만, 현재의 점유·경작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성호는 북한 토지개혁이 노동력 기준으로 분배한 것은 가족수 기준으로 분배한 중국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비의 측면에서 농민층 재분배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김성호, 「북한의 토지개혁(1946년)과 농촌계층구성변화-결정과정과 지역사례」, 『동방학지』 8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5, 98면).
- 4) 두 사업에서 결정된 수배농가 사이의 변동 상황은 필지별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현재 별고로 준비 중이다.
- 5)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 『경제사학』 8, 경제사학회, 1984, 195~272면;

의한 식민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고, 이후 후속 연구들도 이러한 관점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농지개혁이 농업잉여의 축적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 공급에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⁶⁾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연구들은 농지개혁의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유식은 농지위원회의 역할을, 조석곤은 受配農家の 변화(轉賣買) 현상을 부각시켰다.⁷⁾

한편 농지개혁이 수립한 자작농체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그 영세성이 가지는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연구도 한 축을 이루었다. 이용기는 농지개혁은 ‘소작 빈농’을 ‘자작 빈농’으로 전환시켰을 뿐이며 그 영세성의 한계는 혈연적 관계망에 기초한 전통적 권위 질서에 의해 방어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농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했다. 정상욱·김석준, 하유식·이정봉 등도 수배농가의 영세성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정승진은 나주군 금천면에서 나타난 ‘지리한 상환과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그 영세성에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 『경제사학』 9, 경제사학회, 1985, 13~90면;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6) 박석두, 「농지개혁과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경주 李氏家の 토지경영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1, 경제사학회, 1987, 187~281면; 류기천, 「농지개혁과 토지소유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충남 연기군 남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4, 경제사학회, 1990, 147~198면; 홍성찬, 『한국근대 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1992; 이지수, 「해방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 문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장상환,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제발전연구』 6-1, 한국경제발전학회, 2000, 141~176면;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정승진, 「20세기 전반 전통 농촌지역의 사회변동 양상-전남 나주군 다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235~276면.
- 7) 정승진·松本武祝,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1970)」, 『한국경제연구』 17, 한국경제연구학회, 2006, 41~77면; 하유식, 「농지개혁기 울주군 상북면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세계』 33, 호원사학회, 2008, 81~122면; 조석곤, 「농지개혁 당시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경제사학』 48, 경제사학회, 2009, 127~161면; 하유식, 「울산군 상북면의 농지개혁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0; 조석곤,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지주·농민의 입장-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343~411면; 조석곤,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시흥군 수암면 사례」, 『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377~421면; Cho, Seokgon,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2013, pp.75~101.

서 찾았다.⁸⁾

한편 북한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는 그 진행과정과 역사적 성격에 관한 장상환, 강정구의 선구적 연구가 있다. 전현수는 토지개혁 입안과정에 있어 소련의 역할과 토지개혁 실시과정에서 보여준 각 정파의 입장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김성보는 노획문서를 이용하여 선천군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물세 부담 규모의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데, 김성보는 대략 준수되었다고 본 반면, 김재웅은 농민의 이기적 현물납부와 판정오차를 이용한 국가의 過當徵收가 공존했음을 지적하고 공산당이 이를 완벽히 조정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⁹⁾

남북한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들은 강조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북한 토지개혁이든 남한 농지개혁이든 그것을 체제 공고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파악한다는 점, “농가 조사 → 분배농지확정 → 토지/소유권 분여”라는 유사한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사업의 실시과정은 단순한 토지분배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는데, 박찬승은 지역사회의 중첩된 모순이 폭발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으로, 그리고 이현주는 체제 공고화를 위한 同盟과 排除의 과정으로 보았다.¹⁰⁾ 남한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체제를 공고하게 하는데 결정적이었던 정책이었던 것처럼, 피점령지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 역시 체제 전환을 의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8) 이용기, 「한국농지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혈연적 관계망에 주목하여」, 유용태 편, 『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55~89면; 정상욱·김석준,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장유면 농지개혁의 실태」,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69~418면; 하유식·이종봉, 「농지개혁 전 울산군 웅촌면의 토지소유권 변동 연구」, 『대구사학』 123, 대구사학회, 2016, 87~131면; 정승진, 「장기사의 관점에서 본 나주의 농지개혁-전남 나주군 금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383~441면.

9) 장상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과정의 특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1987, 95~133면; 강정구,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민족주체적 시각에서」, 『경제와사회』 7, 비판사회학회, 1990, 193~234면;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대구사학』 68, 대구사학회, 2002, 85~135면;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김성보, 「해방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동방학지』 7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861~890면; 김재웅,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 『역사와현실』 75, 한국역사연구회, 2010, 279~318면.

10) 박찬승, 「한국전쟁기 합덕면 마을 주민간의 갈등」, 『사회와역사』 74, 한국사회사학회, 2007, 147~176면; 이현주, 「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 점령하의 서울-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1, 서울학연구소, 2008, 203~235면.

그렇지만 차이점 또한 중요했다. 첫째, 두 지역이 상이한 체제로 귀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소유권 귀속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남한 농지개혁에서 수배농가의 상환부담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有償’ 방식을 택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無償’ 방식을 택한 북한과 소유권 분여 방식을 달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남한은 상환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북한에서는 토지(결과적으로 경작권)가 분여되었을 뿐이었다. 둘째, 최일선 집행기관으로 남한 農地委員會와 북한 農村委員會의 구성에 큰 차이가 있었다. 남한은 지주와 소작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면단위의 농지위원회가 실무 역할을 한 반면, 북한은 소작인이 주도하는 리 단위의 농촌위원회가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농지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었던 반면, 북한의 경우는 부재지주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소작농에게도 불리하게 진행되었다.¹¹⁾

남한 농지개혁에 대한 사례연구가 확대되면서 남북한 토지개혁을 동시에 경험한 지역으로서 수복지구나 피점령지도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¹²⁾ 수복지구에 대해서는 김운근·이두순의 연구가 있다. 수복지구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은 철저하게 무상몰수되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나, 점수제는 규정대로 이행되기보다는 개혁을 주도한 농촌위원회의 판단에 따랐고, 농촌위원회는 상부지시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분배통지서는 서면보다는 구두통지가 일반적이었다. 현물세 부담에 대해서는 법정 평균 현물세율 25%를 초과 징수했다고 한다.¹³⁾

피점령지에서 북한이 진행한 토지개혁에 대한 연구들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 연관되므로 자세히 살펴본다. 김태우는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이 하향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북에서

11) 하유식, 앞의 2010 논문; 이주철, 「토지개혁 이후 북한 농촌사회의 변화-1946~1948년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247~280면. 분배방식에서 점수제의 적용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남한 농지개혁의 경우 원래 점수제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12) 이와 관련하여 한모니까는 유엔군과 북한군의 점령지 통치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모니까, 「한국전쟁기 남한(유엔군)·북한의 ‘점령통치’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제언」, 『역사와현실』 84, 한국역사연구회, 2012, 407~431면.

13) 김운근·이두순, 「수복지구에 있어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75~90면; 김운근·김두순, 「수복지구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본 북한토지개혁의 재평가」, 『농촌경제연구』 31, 한국농업경제학회, 1990, 89~105면.

경험을 쌓은 농촌지도일꾼들을 선발하여 남한 점령지역의 농촌에 ‘전권대표’ 혹은 ‘지도위원’으로 파견”한 데서 알 수 있는데, 이 조치는 이미 전쟁 전부터 준비한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에 따른 것이었다.¹⁴⁾

기광서와 한모니까는 피점령지에서 실시한 북한 토지개혁에서 남한의 농지개혁에 의한 토지분배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지적했다. 기광서는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후보 중 선출자의 비율이 90% 내외로 높았지만 회북면의 경우 찬성자의 수가 59%에 그쳤음을 지적했다.¹⁵⁾ 이현주는 피점령지 서울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에서는 “해방지구의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의 몰수 토지 대부분이 국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조국의 수도인 대 서울을 건설할 도시경영 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그 주변지대를 국가에서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 분여대상 농민(시민)들에게는 무상으로 경작권만 부여했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했다.¹⁶⁾

정병준은 시흥군의 사례를 들어 피점령지 토지개혁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과정은 북한 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극도로 주의 깊고 세심한”¹⁷⁾ 정책이라고 보았다. 뿌리내리기 과정에서 무상으로 소작지를 분배받은 하층 농민들은 토지개혁의 실시를 새로운 시대의 개막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중소지주 겸 자작농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부농의 반발과 이들에 대한 지역 사회 내의 동정적 반응들은 전시 북한토지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¹⁸⁾ 김보경도 토지개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작지 감소로 느낀 농민은 자소작농이 제일 많았다고 보았다.¹⁹⁾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회남면에서 진행된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농지개혁의 진행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두 사업에서 작성된 농가별 자료

14) 김태우,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토지개혁」, 『역사비평』 70, 역사비평사, 2005, 249면.

15) 기광서,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7~32면; 한모니까,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영토점령과 제도이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233~264면.

16) 이현주, 앞의 2008 논문, 220면.

17) 미공군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정병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과 지방사회의 변화-경기도 시흥군의 사례」,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70면.

18) 정병준, 앞의 2012 논문, 58면.

19) 김보경, 앞의 논문, 163면.

를 각각 분석한 후 양자를 비교 분석한다. 먼저 2절에서는 사례연구지역의 특성과 자료현황을 소개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점령지에서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 실적을 간단히 정리한다. 3절에서는 회남면에서 실시된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진행과정을 살펴본다. 남한 농지개혁에서는 전매매 상황을, 북한 토지개혁에서는 농촌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살펴본다. 4절에서는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을 수배 농가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격적 분석은 후속 연구로 미룬다. 5절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표 1〉 북한의 토지개혁(1946.3.31. 조사)

(단위: 정보)

구분	경지	비경지	계	호수
일본인 소유	110,661	6,733	117,394	12,919
반역자 및 도주자 토지	12,391	934	13,325	1,366
5정보이상 소유지주 토지	230,732	8,250	238,982	29,683
전부 소작 준 토지	258,858	5,272	264,130	145,696
계속 소작 준 토지	353,712	5,345	359,057	228,866
종교단체 토지	14,908	382	15,290	4,124
비몰수 토지	759,920	52,000	811,920	311,586
몰수토지의 비율(%)	56.4	34.1	55.4	57.6
총계	1,741,182	78,916	1,820,098	734,240

출전: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155면.

Ⅱ. 한국전쟁기 북한의 被占領地 土地改革과 사례연구 지역의 특성

1946년 북한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급속히 완결되었다. 북한 6개도에 11,500여 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고, 90,697명의 貧農·雇農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토지개혁의 실행 주체가 되었다.²⁰⁾ 강정구는 남북한 농지개혁을 비교하면서 재분배된 농지면적이 총 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에서 23.7%인

반면, 북한에서 53.0%였다고 보았다. 북한지역 경지의 1942년 소작지율이 논과 밭에서 각각 64.3%와 49.6%였으므로 몰수된 면적은 소작지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²¹⁾ 전체 소작지 중 재분배 농지가 차지한 비중은 남한은 37.5%, 북한은 95.0%였다. 다만 전체 농가에서 분배받은 농가의 비율은 남북한 각각 70.1%와 72.0%로 유사했다.²²⁾ <표 1>에 의하면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에서 경지 중 몰수 토지의 비율은 56.4%였다. 위 연구들에서는 이처럼 신속하고 철저하게 토지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로 지주층의 상당 부분이 월남하여 조직적 반대가 어려웠고, 소련이 토지개혁을 지지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남한 농지개혁의 분배면적은 최종적으로는 귀속농지 27만 정보 포함하여 58.5만 정보였는데,²³⁾ <표 2>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에서 실시한 토지개혁면적은 59.6만 정보였다. 이 면적에는 북한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의 경지는 제외되었을 것이므로 피점령지의 분배면적은 북한 토지개혁의 경우가 더 컸을 것이다. 남한에서 실시된 북한의 피점령지 토지개혁도 한국전쟁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1950년 8월 말에 이르면 전남, 경북, 경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 지역 1,526개 면 중에서 1,198면에서 실시되었다.²⁴⁾ 조직된 농촌위원회의 숫자도 1만8천여 개에 달하였다.

북한 토지개혁에서 토지 없는 농민이 분배 받은 면적은 6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²⁵⁾ 반면 <표 2>를 보면 남한에서 실시한 피점령지 토지개혁에서 토지가 없는 농민의 비중은 33.0%였고, 오히려 토지가 적은 농민이 58.5%로 가장 큰 비중을

2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345면.

21)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북한의 역사 제2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231면.

22) 강정구, 『좌절된 사회혁명』, 1989, 열음, 310면. 남한의 분배농지가 북한에 비해 적은 것은 지주의 事前放賣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분배 받은 농가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것은 사전방매 되지 않은 소작지의 분배에 있어서 남북한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시사한다. 이는 농지개혁/토지개혁 전후의 농가당 평균보유면적이나 지니계수의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3) 김성호, 앞의 1989 책, 1028면.

24)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10~311면. 전남은 252면 중 도서지방을 제외한 208면에서 실시되었다. 경북은 251면 중 107면에서, 경남은 239면 중 99면에서 실시되었다.

25) 강정구, 앞의 1989 책, 308면.

차지했다. 분여 받은 농가는 피점령지 농민의 66%에 달하였다. 북한 토지개혁에 비해 토지가 없는 농민의 비중이 낮은 것은 남한과 북한 토지소유구조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주원인은 농지개혁에 의해 토지를 분배받은 소작농들이 토지가 없는 농민에서 토지 적은 농민으로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표 2〉 피점령지의 토지개혁

(단위: 정보, 호)

몰수 토지		분여농가 면적 및 호수		
구분	면적	구분	면적	호수
미국인소유	975	고용농민	28,080	81,579
이승만정부 소유	39,627	토지 없는 농민	196,494	341,407
회사 및 상사 소유	14,993	토지 적은 농민	348,769	844,892
지주소유 및 계속 소작준 토지	524,491	총계	573,343	1,267,878
기타	16,116	국유지	22,859	
계	596,202		596,202	

출전: 기광서,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21면.

이제 연구대상지역인 회남면을 간단히 살펴본다. 회남면은 1914년 일제의 군면 통폐합 당시 조선시대 말 懷仁郡의 강외면·남면 지역과 동면·서면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총 20개 리로 구성되었다.²⁶⁾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노성리는 수한면에, 염티리는 청원군에 편입되어 현재 18개리이며, 1980년 대청댐 건설로 6개 리는 대부분 수몰되었다.²⁷⁾

회남면 노획문서에는 총 779건의 『土地分與證明書』가 남아 있고, 기타 충북 및 보은군의 토지개혁 경과를 보여주는 문서철도 수십여 건이 남아 있어 실상을 파악할

26) 면사무소 소재지는 조곡리였으며, 그 외 신추리, 금곡리, 판장리, 용호리, 분저리, 사탄리, 송포리, 서탄리, 은운리, 노성리, 사음리, 매산리, 산수리, 법수리, 거교리, 염티리, 어성리, 남대문리, 신곡리 등이 소재하였다.

27) 1980년 대청댐 수몰로 인하여 사탄, 서탄, 용호, 송포, 어성, 매산 6개 리가 침수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 시기는 1977년경까지이므로 대청댐으로 인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면의 규모는 점차 쇠락하여 2019년 8월 현재 474세대 7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 있다. 박명림은 보은군 토지개혁에 관한 토지개혁실행위원회 위원장의 글을 인용하면서, 남한 농지개혁에 의해 총 3,697호가 1,404정보(평균 0.38정보)의 농지를 분배받았는데, 이중 2,224호가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한다. 한편 피점령지 토지개혁에서는 7,117호의 농가가 2,567정보(평균 0.36정보)를 분배받았다고 한다.²⁸⁾ 보은군에서 북한 토지개혁은 남한 농지개혁에 비해 분배받은 농가의 수와 분배면적 모두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대폭적인 증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고용 농민이 수배농가에 포함되었고, 자소작농의 일부 토지가 분배 대상농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간략히 소개한다. 농지개혁 직전의 상황은 『土地臺帳』을 통해 알 수 있다. 『償還臺帳』과 『分配農地簿』은 남한에서 실시한 농지개혁의 상황을 알려준다. 매수농지에 대한 『분배농지부』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필지를 추가하였다. 세 장부 사이에 상위점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토지대장』을 통해 농지개혁 직전인 1949년 말의 필지별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분배농지부』가 작성된 1961년 시점의 필지별 정보를 알 수 있다. 『상환대장』으로 확인된 분배농지 정보는 1950년 당시의 수배농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분배농지부』로부터는 1961년 당시의 수배농가를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각각 ‘남한1’ 수배농가, ‘남한2’ 수배농가라고 부른다.²⁹⁾

희남면에서 시행된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농가별 정보는 『토지분여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이 피점령지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근거가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르면 분배받은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증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원래 농촌위원회 사업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였다.³⁰⁾

28) 박명림, 「북한혁명의 성격: 반정복과 반혁명-북한토지개혁의 과정·내용·의미 분석」, 『아세아연구』 97,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7, 188면. 이 수치는 <표 15>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작성 시점에 따라 수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관련 내용은 후술한다.

29) 세 장부의 연결과 관련해서는 조석곤,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지주·농민의 입장-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343~411면 참조.

SHIPPING ADVICE - 2009
BOX 6
ITEM 135

토지소유권증명서

Batch No. 2
Item No.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SHIPPING ADVICE NO 2009
BOX 6
ITEM 135

토지개척 법령에 의하여 분적받은토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용인군			400	
			650	
			50	
			349	
			200	
			100	

토지소유권증명서

본토지소유권증명서는 용인군(시) 토지소유권
증명서 교부대장제 2973 토지소유권 증명서

SHIPPING ADVICE 2009
BOX 6
ITEM 135

출전: 노획문서, 『토지소유권증명서』.

〈그림 1〉 「土地所有權證明書」의 예

- 30)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 제9조 토지의 분여는 도인민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증명서를 분여 받은 농민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료된다(노획문서, 발가리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또한 동 법령의 시행세칙에서는 별도로 토지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의 장을 마련하여 “정령 제9조에 의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농촌위원회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도 인민위원회에서 분여 받은 농민들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은군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발급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림 1>은 북한이 발행한 「토지소유권증명서」의 한 예이다. 경기도에서 진행된 북한의 토지개혁은 충북에 비해 시기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양식에서 주목할 것은 “토지개혁 정령에 의하여 분여 받은 토지”와 “토지개혁 이전의 소유토지로서 현재에도 소유한 토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당 증명서의 명의인이 ‘분여 받’거나 ‘소유한’ 토지 모두를 기재했다는 것은 농민으로 하여금 분여 받은 토지도 자신의 소유지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증명서는 용인군에 거주하는 리OO의 것인데, 1950년 8월 30일에 발급되었다. 이 증명서는 그 말미에 주의사항을 4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양도가 불가능하며, 내용 변경이나 분실시 재발급의 경우에도 도인민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사실상 등기의 역할을 하였던 셈이다.³¹⁾

토 지 분 여 증 명 서

1 분여 받은 농민의 주소 성명

도 시 군 읍 민 동 〇 〇 〇

2 부여 받은 토지의 목록

필지번호	토 지 소 재 자	지번	지목	면적

이상과 예외 없이 부여함

본 증명서는 후속 토지소유권 증명서와 교환함

1950년 8월 23일

도 인민위원장 〇 〇 〇

출전: 충북인위 → 각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토지분여증명서교부에 대하여」.

<그림 2> 『토지분여증명서』 양식

- 31) ‘주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토지소유권증명서는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증서임으로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권증명서는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며 증명서 내용을 자의로 정정 또는 기입하지 못한다. ③소유 토지 중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인민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 증명서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④토지소유권증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에 도인민위원장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Ⅲ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경기도에서의 토지개혁은 8월 중순에도 종료되지 못하였는데, 8월 30일 전후에 등기에 준하는 증명서가 발급되었던 것은 엄청난 신속함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속한 증명서 발급은 당시 불리한 戰況을 극복하고 농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시급하게 농민들에 발급해 주는 것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민심을 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토지소유권증명서」는 원래 도인민위원장 명의로 교부하게 되어 있으나,³²⁾ 각 시군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정치적으로 보아 이 증명서를 신속히 교부할 필요성에 의하여 각도 인민위원장은 각시군 인민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각 시군위원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게 되었으니 토지개혁이 끝나는 대로 20일 이내에 각 시군 인민위원장들의 별지 요강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³³⁾ 원래 이 양식은 북한에서 인쇄되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운송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임시로 『토지분여증명서』 양식을 작성 교부한 후 양식이 도착하면 즉시 교환해 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보은군에서는 토지소유권증명서 대신에 <그림 2>와 같은 『토지분여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양식도 인쇄물이 아니라 등사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증서를 발급해야만 했던 북한의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글에서는 『토지분여증명서』에 근거하여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 관련 정보를 정리한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토지분여증명서』의 정보는 심지어 지번 정보도 없는 경우가 있어 그 신빙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토지대장』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부 정보가 부정확한 부분은 『토지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다행인 것은 『토지분여증명서』에 기재된 필지의 번지는 『토지대장』의 번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토지분여증명서』로부터 분배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북한’ 수배농가라고 부르기로 한다.

32) 충북 인민위원회 재정과, 『재정관계철』. 토지소유권증명서는 충북 전체에 158,304매가 할당되었으며, 그 중 보은은 13,298매였다. 이는 1949년 5월 보은군 총가구수인 15,033호보다는 적지만 1950년 7월 13,271호보다는 많다.

33) 농림상 박문규 → 각도 인위장, 토지개혁실행위원장, 「토지소유권증명서 교부 절차에 대하여」.

Ⅲ. 두 번의 土地·農地改革 실시과정과 그 결과

이 절에서는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실시과정을 정리한다. 1949년 농가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정부는 1950년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피점령지에서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도 그 몇 달 뒤인 8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두 사업 사이의 시차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남한 농지개혁 실시과정은 선행 연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실적과 수배농가의 변화(전매매)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선행연구가 소략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과정도 함께 설명하고 농촌위원회의 구성문제도 함께 정리한다.

〈표 3〉 보은군 농지분배 상황(197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필지, 정보)

	호수	필지수			분배면적(정보)		
		논	밭	계	논	밭	계
매수	2,772	2,563	1,744	5,307	441	418	859
귀속	1,461	1,413	1,167	2,580	249	186	435
계	4,233	3,976	2,911	7,887	690	604	1,294

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제3권), 120~121면.

1. 회남면에서 실시된 남한의 농지개혁

여기에서는 보은군 및 회남면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의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3>은 1970년 말 현재 보은군 농지개혁 실적을 보여준다. 보은군에서는 총 7,887 필지 1,294정보가 분배되었으며, 그 중 매수농지는 5,307필지 859정보였다. 상환량은 1970년 말 현재 매수 2,376.4톤, 귀속 1,357.8톤으로 합계 3,734.2톤이었으며 전량 상환되었다.³⁴⁾ 충북은 서울을 제외하면, 전군에 걸쳐 미납량이 전혀 없는 유일한 도였다.

1952년 말 현재 보은의 농가호수는 12,245호이고 농가인구는 75,021명이므로,³⁵⁾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3, 1984, 134면.

보은군 수배농가는 전체 농가의 30% 내외일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 농지개혁 당시 농민들이 매입한 농가는 3,697호이며, 2,224호는 전액을 지불하였고, 1,473호는 일부만 지불하였다고 한다. 매입 토지는 총 1,404정보(논 842정보, 밭 562정보)였다.³⁶⁾ <표 3>에 나타난 남한 농지개혁 면적은 1,294정보이므로 농지개혁 개시 시점에 비해 분배면적이 100여 정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생산성이 열악했던 지역의 특성상 분배농지를 포기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⁷⁾

이제 회남면의 농지개혁에 대해 살펴보자. 회남면 농지개혁 직전의 상황은 『토지대장』으로부터 알 수 있다. <표 4>를 보면 1949년 말 현재 회남면에는 총 7,242필지가 있었는데, 이 중 전답은 5,937필지였다. 회남면은 궁벽한 산간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밭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필지수로는 54.6%인데, 면적으로는 66.7%에 달했다. 평야지대의 경우는 필지당 논 면적이 밭보다 넓은 것이 보통인데, 회남면은 밭의 필지당 면적이 더 넓었다. 논·밭의 생산력이 높지 않았을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회남면에서 실시된 농지개혁 실적은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로부터 알 수 있다. 『상환대장』은 농지소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최종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그 변동사항을 기록한 장부이다. 따라서 『상환대장』으로부터 원수배농가와 최종수배농가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상환대장』이 작성된 농민은 229명이었으며 총 449필지의 토지가 있었다. 이 중 중복되는 필지와 회남면 이외 지역에 있는 필지를 제외하면 398필지이다. 회남면에는 귀속농지의 『분배농지부』는 있지만 매수농지의 『분배농지부』가 없어서 해당 필지들은 『토지대장』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환대장』이 없는 7필지의 매수농지를 더 찾아냈고, 1필지가 중복된 필지임이 확인되었다. 이것을 추가하면 회남면 분배농지는 총 404필지로 전체 경지의 6.8%에 지나지 않았다.³⁸⁾ 다른 사례 연구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다. 이처럼 『상환대장』,

35)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53.

36) 노획문서철, 『토지개혁 조직 지도원 및 선전원 조직 통계 보고』.

37) 주 28)에서 박명림이 언급한 수치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생산성이 열악했다는 사실은 회남면 필지 중에는 『토지대장』에 지세를 면세 받는 기간이 등록된 토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한 것이다.

38) 왜 『상환대장』이 남아 있지 않은지는 불명이다. 또 용호리 306-8 및 310-1은 귀속농지부에는

『분배농지부』, 『토지대장』의 정보를 결합하여 회남면 분배농지에 관한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修正分配農地簿』라 부르기로 한다.³⁹⁾

〈표 4〉1949년 말 지목별 리별 토지면적

(단위: 필지, 정보)

리	필지수					면적				
	전	답	대	기타	합계	전	답	대	기타	합계
거교리	249	132	26	133	540	47.9	14.5	3.4	6.6	72.5
금곡리	265	74	20	12	371	45.4	9.4	2.5	2.2	59.4
남대문리	373	135	30	32	570	86.1	17.0	2.6	4.2	109.9
법수리	320	300	28	178	826	37.0	40.1	2.0	9.8	89.0
분저리	159	80	23	5	267	32.0	11.1	1.9	0.6	45.8
사음리	214	78	59	21	372	33.1	9.7	3.4	1.1	47.3
산수리	157	87	33	22	299	26.1	15.7	2.4	2.7	46.9
신곡리	263	123	63	47	496	45.1	14.3	5.3	2.6	67.3
신추리	227	76	13	32	348	31.3	7.6	1.5	3.1	43.3
은운리	229	74	30	29	362	29.5	5.5	2.1	1.1	38.1
조곡리	241	129	37	27	434	41.6	16.1	2.6	1.6	61.9
판장리	280	204	60	11	555	39.6	22.2	5.0	1.2	68.1
사탄리	136	23	17	37	213	19.0	1.6	0.9	0.8	22.4
서탄리	246	29	32	17	324	44.8	2.1	1.3	2.1	50.3
용호리	273	281	38	140	732	41.8	32.2	2.2	3.8	79.9
송포리	95	14	15	13	137	12.6	0.9	0.8	0.7	15.0
여성리	51	23	5	1	80	8.3	1.6	0.5	0.2	10.6
매산리	179	118	9	10	316	36.3	20.0	1.2	1.1	58.4
합계	3,957	1,980	538	767	7,242	657.5	241.6	41.6	45.3	986.0

출전: 회남면 『토지대장』

없지만 『토지대장』 상에는 長谷川橘太의 소유지로 되어 있다. 이 두 필지는 이하의 논의에서는 귀속농지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일본인지주의 소유지였다가 해방 이후 조선인으로 소유지가 바뀐 13필지는 사실상 귀속농지였으므로 귀속농지로 처리한다.

39) 『수정분배농지부』의 작성은 조석곤의 남종면 사례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석곤, 앞의 2011 논문 참조.

<표 5>는 『수정분배농지부』에 기초하여 회남면 지목별 리별 분배농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송포·어성·매산리에는 분배농지가 없다. 담보다는 전이 많은 것은 산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분배농지 중 귀속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지수로는 289필지(71.5%), 40.1정보(70.8%)로 매수농지보다 높았다. 귀속농지는 長谷川橘太의 소유지가 187필지, 동척소유지가 84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귀속농지에 대한 등기는 2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1960년대 초반 수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진행되었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회남면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귀속농지의 대부분은 법수·분저·신곡·용호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거교리 등 6개리에는 귀속 농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외의 일본인 지주는 2명이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회남면은 식민지지주제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리별 분배농지 지목별 현황

(단위: 필지, 정보)

구분	리	귀속			매수			계		
		전	답	합계	전	답	합계	전	답	합계
필지수	거교리				1	2	3	1	2	3
	금곡리				4	1	5	4	1	5
	남대문리		7	7	1		1	1	7	8
	법수리	31	35	66	2	2	4	33	37	70
	분저리	37	20	57				37	20	57
	사음리	3		3				3		3
	산수리	8	1	9	1	6	7	9	7	16
	신곡리	19	20	39	1		1	20	20	40
	신추리				2		2	2		2
	은운리	1		1	25	9	34	26	9	35
	조곡리				11	11	22	11	11	22
	판장리				7	1	8	7	1	8
	사탄리	9	3	12	6	0	6	15	3	18
	서탄리				8		8	8		8
	용호리	34	61	95	7	7	14	41	68	109
	합계	142	147	289	76	39	115	218	186	404

면적	거교리				0.20	0.36	0.56	0.20	0.36	0.56
	금곡리				0.54	0.12	0.66	0.54	0.12	0.66
	남대문리		0.55	0.55	0.13		0.13	0.13	0.55	0.68
	법수리	3.88	3.98	7.86	0.21	0.43	0.64	4.09	4.41	8.50
	분저리	6.96	2.73	9.69				6.96	2.73	9.69
	사읍리	0.48		0.48				0.48		0.48
	산수리	1.08	0.23	1.31	0.23	1.13	1.36	1.31	1.36	2.67
	신곡리	4.22	1.63	5.85	0.30		0.30	4.52	1.63	6.15
	신추리				0.22		0.22	0.22		0.22
	은운리	0.19		0.19	2.38	0.67	3.05	2.57	0.67	3.24
	조곡리				1.60	0.81	2.40	1.60	0.81	2.40
	판장리				1.45	0.10	1.54	1.45	0.10	1.54
	사탄리	1.98	0.26	2.23	0.94		0.94	2.92	0.26	3.17
	서탄리				2.15		2.15	2.15		2.15
	용호리	4.93	6.98	11.91	1.76	0.80	2.56	6.69	7.78	14.47
	합계	23.72	16.35	40.07	12.10	4.40	16.51	35.82	20.76	56.58

출전: 『수정분배농지부』.

회남면에는 기존 사례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농지분배조서가 남아 있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⁴⁰⁾ 별지 양식으로 인쇄된 것으로 보아 농지분배조서는 미군정이 실시한 귀속농지 분배사업과 대한민국의 농지분배를 연결시키기 위해 작성된 공식 장부의 하나로 판단된다. 양식은 농지수배자, 분배농지표시, 총상환액 및 연도별상환액, 기타 참고사항 등 4항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 3항이 기재되었다.

- ① 본 표는 농지분배예정통지서에 의하여 작성할 것
- ② 보유 농지가 유할 시는 (보유)라고 날인할 것
- ③ 양수인 및 토지대가란은 분배농지에 대한 과징법령 제173호의 양수인(경작인)과 토지대가를 칭함.

40) 국가기록원에는 농지분배조서가 다수 남아 있는데 대부분 충북과 경북지방의 것이다. 일본인 지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농지분배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단지 보존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농지분배조서는 『상환대장』의 기재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상환대장』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서류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농지분배예정통지서는 1950년 5월경에는 발급되었으므로 귀속농지에 대한 농지분배조서도 그 즈음 작성되었을 것이다. 회남면 농지분배조서는 총 134명에 대해 작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상환대장』에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둘째 항목과 관련된 표시는 없었는데, 이는 해당 농민이 모두 순소작농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별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항목과 관련된 기록도 없었는데, 이는 농지분배조서 작성 시점에서 귀속농지를 분배받은 수배농가 중에서 1950년 5월경에 수배농가가 바뀐 경우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농지분배조서는 미군정과 대한민국 농지개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장부였다. 농지분배조서에 기록된 연도별 상환액은 계획이며, 『상환대장』에는 실제 연도별 상환액이 기록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농가별 필지정보는 동일했다. 1948년 3월에 이루어진 귀속농지 분배도 수배농가의 변동이 없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회남면에 국한되는 것이지, 충북 전체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배농지부』에는 3필지의 귀속농지가 더 나타나는데, 이는 대전에 거주했던 若林茂의 토지들이었다. 농지분배조서 작성 당시에는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분배농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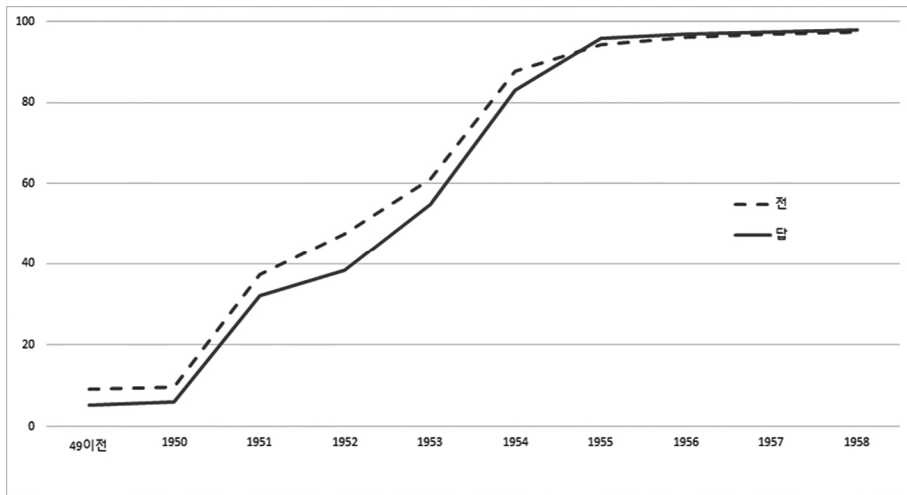
〈표 6〉 피분배지주의 거주지별 분포

(단위: 필지, 정보)

	필지			면적		
	전	답	합계	전	답	합계
같은 리 거주	20	6	26	4.0	0.9	4.8
같은 면 거주	21	5	26	3.7	0.4	4.1
같은 군 거주	23	17	40	3.2	1.7	4.9
다른 군 거주	22	13	35	3.3	1.7	4.9
일본인 지주	132	145	277	21.7	16.2	37.9
합계	218	186	404	35.8	20.8	56.6

출전: 『수정분배농지부』.

<표 6>은 토지를 분배당한 지주의 거주지별로 분배농지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인 지주 중에서 회남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비중을 보면 75필지(59.1%), 9.8정보(52.4%)로 절반을 상회하지만 압도적이진 않으며, 인접한 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재촌지주의 비중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출전: 『상환대장』.

〈그림 3〉 연도별 償還實績

연도별 상환실적은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상환 마감 연도인 1954년에 85.6%였으며, 『상환대장』에 기록이 마감된 1958년에는 97.7%에 이르렀다. 전답별로는 애초에는 전의 납부율이 약간 높았다가 1955년 이후부터 답의 납부율이 더 높았지만, 납부율 추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귀속농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의 특성상 1949년 이전에도 상환곡 납부율이 7.4% 수준으로 높았다. 기존 사례연구 지역과 차이점은 1950년도의 납부율이 7.8%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사실상 1950년도에 납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20%의 납부율을 보였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에서 1950년 말 행정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1954년의 실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⁴¹⁾ 초반의 낮은 실적을 빠르게 회복한 것이 회남면 사례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7〉 전매매 농가 현황

(단위: 필지, 정보)

전매매 여부	필지수			면적		
	귀속	매수	합계	귀속	매수	합계
없음	252	77	329	34.7	12.2	47.0
있음	37	38	75	5.4	4.3	9.6
합계	289	115	404	40.1	16.5	56.6

출전: 『수정분배농지부』.

다음으로는 분배농지의 전매매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분배농지의 전매매에 관한 선행연구로 원주 호저면, 시흥 수암면, 광주 남종면 등의 사례 연구가 있다.⁴²⁾ 이 연구들은 농지개혁 과정에서 수배농가는 크게 변동했지만, 변동 이후 수배농가(즉 ‘남한1’ 및 ‘남한2’ 계열)의 역사적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농지개혁이 설정한 평등주의원칙이 궁극적으로 관철되었음을 보였다. 한편 면 단위의 연구는 아니지만 정상욱·김석준, 이용기는 리 단위에서 전매매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장유면 신문리의 경우는 28.6%, 장흥 용산면 칠리안속의 경우는 29.4%, 강진 성전면 수양리의 경우는 50.4%(불명 제외)였다고 하였다.⁴³⁾ 앞 사례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전매매 현상이 수배농가의 경제적 열악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7>을 보면 전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75필지(18.6%), 4.3정보(17.0%)로 다른 시도의 사례에 비하면 현저히 낮으며, 앞서 말한 선행연구들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전매매는 매수농지에서 보다 활발했는데, 필지수로 보면 귀속농지의 전매매 비율은

41) 총상환량에 대한 누계수납실적은 1954년말 72.4%였던 반면, 회남면의 경우는 86.1%로 초반의 부진을 만회하였다. 김성호, 앞의 1989 책, 717면.

42) 조석곤, 「농지개혁 당시 수배농가의 토지소유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경제사학』 48, 경제사학회, 2009, 127~161면; 조석곤,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시흥군 수암면 사례」, 『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377~421면; Cho, Seokgon,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13, pp.75~101.

43) 정상욱·김석준, 앞의 2009 논문; 이용기, 앞의 2014 논문.

12.8%였지만, 매수농지에서는 33.0%로 2배 이상이였다. 이들 농가에는 성씨가 동일한 전매매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속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만일 전매매로 예상한 필지 중에 상속부분이 포함되었다면, 전매매 농가의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매매 농가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 도였다.⁴⁴⁾ 도별로는 식민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전매매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남면 사례의 경우는 귀속농지의 전매매가 오히려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자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표 8〉 전매매농가의 수분배면적 현황

(단위: 호수, 평)

전매매 여부	면적	원수배농가		현경작자	
		농가수	평균면적	농가수	평균면적
없음	140,856	160	880	160	880
있음	28,883	44	656	45	642
계	169,739	204	832	205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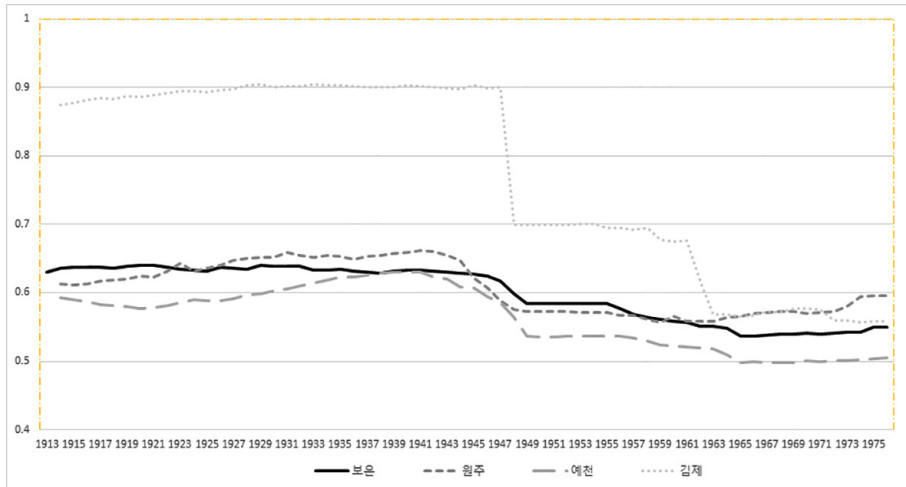
출전: 『수정분배농지부』.

<표 8>을 보면 원수배농가, 즉 애초에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총 204호인데, 이 중 분배농지를 판 농가는 44호였다. 한편 최종 소유권 이전 당시 현경작자, 즉 분배농지를 매입한 사람은 45호로 원수배농가에 비해 많았다. 농가수를 보면 원수배농가 중 13명(6.9%)은 분배농지 중 일부만 매각하였고, 현경작자 중 9명은 원경작자였으면서 추가로 분배농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남면의 경우는 전매매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원수배농가와 현경작자의 경제적 지위도 크게

44) 1959년에 실시된 분배농지 전매매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별 전매매농가수는 다음 표와 같다.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의 1984 책, 92~93면에서 재구성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총수배농가	9,639	190,369	15,568	77,160	214,635	294,554	325,348	161,605	230,099	2,264	1,521,241
전매매농가	1,290	70,414	3,545	9,373	57,514	147,693	96,591	28,275	38,714	-	453,409
비율(%)	13.4	37.0	22.8	12.1	26.8	50.1	29.7	17.5	16.8	-	29.8

다르지 않았다. 이는 전매매를 통해 토지를 획득한 농가의 경제적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앞서 언급한 이용기 등의 연구보다는 필자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전: 보은, 회남면 『토지대장』; 원주, 조석곤,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농촌경제』 28-2, 2005b,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3면; 예천, 조석곤,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의 변화-예천군 용문면 사례의 예비분석」,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390~427면; 김제, 조석곤,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김제시 죽산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65, 2005a, 박영률출판사, 293~322면.

〈그림 4〉 연도별 지니계수의 추이(1913~1976)

농지개혁의 결과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림 4>는 전국 네 지역의 『토지대장』으로부터 구한 1913~1976년간 토지소유규모의 불평등도 추이를 지니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김제 죽산면의 경우는 일본인대지주의 토지소유가 전체 경제의 90%를 상회할 정도로 식민지지주제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식민지기 소유불평등도가 매우 높다. 1948년에 급격히 하락한 것은 미군정이 실시한 귀속농지 분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 즉 농지개혁 직전에 토지소유의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그러한 경향이 1960년대 전반까지 지속되는 것은 동일하다. 1960년대 중반에 최저점에 도달한 것은 「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회남면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예천군 용문면 사례이다. 식민지시기 예천의 불평등도는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회남면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차이를 제외하면 해방 이후 두 지역은 비슷한 추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외부와 분리된 지역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회남면 농지개혁은 기존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분배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음에도 농지개혁으로 소유규모의 불평등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지니계수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사전방매의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매매 현상도 존재하였지만 비율은 낮았고, 그 결과가 수배농가의 성격을 바꿀 정도도 아니었다. 타 지역사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점은 상황실적이 초기에는 부진하였지만 1954년에는 그 격차를 극복하고 타 지역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2. 피점령지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

피점령지에서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은 1950년 7월 4일 시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7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에 근거한 것이지만,⁴⁵⁾ 남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1949년 5월 9일 남한의 토지개혁을 담당할 기관인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50년 7월 4일 정령 발표 직후에 “남반부 토지개혁지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농림상 박문규가 위원장이 되었다.

45)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여의 원칙에 의거(제1조)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배하되, “자작지와 본 법령에 의하여 분여 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은 이를 영구적으로 보장”(제3조)하였다. 토지개혁에 관한 사항은 자기 동(리)의 고용농민과 토지 없는 농민 및 토지 적은 농민의 총회(농촌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지방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 실시하게 했다.(제4조) 한편,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의 몰수, 분여, 농촌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토지소유권증명서의 교부 등을 규정하였다.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준비단계에서는 토지개혁 실시 직전의 토지소유·경작관계, 귀속농지 분배상황 등을 파악한다. 다음 단계에서 몰수 토지, ‘도주한 사람들의 소유 토지 등의 몰수토지 조사와 함께 자작토지·소작토지·소작 준 토지 등을 조사한 농가별 기본조사서를 작성한다. 이제 토지분여안을 작성하고, 토지소유권증명서를 교부한 후 변화된 토지소유 분석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하였다.

그 시점에서 남한에 500명의 지도위원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역시 7월 14일 직접 서울에 내려와 토지개혁사업을 지휘하였다.⁴⁶⁾

실무를 진행할 도 실행위원회는 도 노동당위원장, 인민위원장, 농맹위원장, 여맹위원장, 직맹위원장, 민청위원장, 각부서 책임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시군구실행위원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도실행위원회는 리 단위까지 북에서 온 지도위원을 파견하였고, 리동의 농촌위원회 구성을 위한 농민총회의 진행을 현장에서 감독하게 했다.

우리는 머리말에서 정병준의 시흥군 사례 연구를 통해 피점령지 토지개혁 연구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법령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은군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보은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병준이 설명한 시흥군 북한 토지개혁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농림성 산하에 남반부 토지개혁지도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개혁 준비사업에 착수한 것은 7월 8일이었다. 토지개혁지도위원회는 황해도(7월 12일), 경기도·서울시(7월 15일), 강원도(7월 17일)에 도전권위원을 파견하여 도위원회 조직을 개시했다. 경기도 토지개혁위원회는 7월 17일 정식으로 구성되었고, 북한 농림성에서 파견된 500명의 토지개혁 지도일꾼들이 각 시군에 배치되었다. 경기도의 계획에 따르면 군위원회 및 군 토지개혁강습회는 7월 20~24일에 완료하며, 면 위원회 및 면 토지개혁강습회는 25~27일 사이에 완료하며, 리 농촌위원회는 27~30일 사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토지분여는 빠른 곳에서는 8월 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8월 9일에는 시흥군 전역에서 토지개혁 경축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⁴⁷⁾

정병준은 미공군보고서에서 북한의 점령 준비가 ‘극도로 주의 깊고 세심한(extreme care and meticulousness)’ 것이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점령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잘 준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그 예로 (1)수천 톤의 전단, 포스터, 선전물들이 인쇄되어 화물차에 보관되었고, 38선 인근에서 서울점령에 대기했다, (2)주요 남한인사에 대한 기록들이 유지되었고, 군대와 거의 동시에 남한으로 이동되었다, (3)내무서원 등의 하급 행정요원은 남한 내 다양한

46)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263~266면.

47) 정병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과 지방사회의 변화-경기도 시흥군의 사례」,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52~54면.

직위에 이미 임명되었고, 38선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 정치지도자들 역시 상당히 주의 깊게 선발되었으며 새로운 임무를 인수할 수 있게 조직되었다, (4)잘 선발된 남한 인사들이 최소 3년간 북한에서 상당한 훈련을 받았다, (5)북한의 토지개혁 체제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계획들이 진행되었다, (6)기소, 세금, 노동법, 선거법 등에서 수정된 북한법률 체계가 미리 준비되었으며, 작동 준비 상태였다고 평가했다.⁴⁸⁾

이러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추진 인력 부족과 그에 따라 현지 집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개혁 사업은 점령한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계획한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점령한 경기도의 경우는 7월 20일 이후 실행위원회 조직하여 도시부는 24일 완료했지만, 면리 단위는 7월 말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에 농림상 박문규가 7월 24-25일 양일간 직접 경기도 고양·양주·시흥군 일부 면동리 검열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농촌위원회에 고용농민을 배제하거나 중농·부농까지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향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⁴⁹⁾ 남한 농지개혁에서는 농지위원회 위원으로 이들도 포함시키도록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 상황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충북의 경우는 이보다 늦어서, 충북임시인민위원회의 토지개혁사업 실시에 대한 결정은 8월 8일 이루어졌다.⁵⁰⁾ 이 문서는 8월 12일 발송되어 보은군에는 17일 접수되었지만, 접수 이전인 8월 12일부터 실행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12~13일간 강습회를 조직하여 토지개혁의 의의와 방법 등을 널리 선전하고, 군면리 실행위원회는 13일 및 14일 양일간 조직을 마치고, 13~20일간 홍보사업과 자위대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각급 단위의 총회를 개최해 26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48) 정병준, 앞의 2012 논문, 70~71면.

49) 농림성 남반부 토지개혁지도위원회 제2차 위원회결정서, 「서울시 및 경기도 토지개혁실행위원회 사업 정형에 대하여」(1950.8.2.)(노획문서철, 충북도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호-토지개혁사업 실행에 관하여).

50) 충북도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호-토지개혁사업 실행에 관하여(1950.8.8.)(노획문서철, 충북도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호-토지개혁사업 실행에 관하여).

〈표 9〉 보은군 총호수 및 인구수

(단위: 호, 인)

	1949년 5월		1950년 7월	
	총가구	총인구	호세부과호	지방세부과호
보은	2,977	16,212	2,764	2,156
내속리	766	4,253	677	688
외속리	675	3,691	633	640
마로	1,551	8,689	1,410	1,551
탄부	1,408	8,100	1,080	1,265
삼승	1,500	8,225	1,228	1,263
수한	1,014	5,773	926	936
회남	1,045	6,081	1,287	977
회북	1,437	8,599	949	1,363
내북	1,524	8,778	1,358	1,415
산외	1,136	6,424	1,026	1,017
계	15,033	84,825	13,338	13,271

출전: 『통계자료철』(충북 임시인민위원회 수매부).

이와 같은 시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 규모는 당시 보은군 인구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9>는 인민군 점령하 충북 임시인민위원회가 작성한 행정통계로 1949년 5월 현재의 총 호수 및 인구수와, 1950년 7월의 호세와 지방세 부과 호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농가 이외의 호수와 인구도 포함되어 있다. 1949년에 비해 1950년 호수가 감소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피난을 간 호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인구규모를 염두에 두고, 보은군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에 동원된 인력을 살펴보자. 현지에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은 의도한 대로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다. 전쟁 중인 데다가 인구도 이탈한 상황에서 현지 실무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실행위원회에 앞서 인민위원회의 구성이 선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보은군 인민위원회 구성은 8월 12~14일간 리 총회를 개최하였고, 면 인민위원회 및 대표자 구성은 13~14일간 이루어졌으며, 군 인민위원회는 15~16

일 간 이루어졌다. 인민위원회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 실행위원회는 시군면 토지개혁실행위원회 조직을 점검하고 결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8월 15일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보은군에서는 16일부터 토지개혁에 관한 강습을 조직하고 17일 오전부터 각 면에서 실행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었다.

〈표 10〉 보은군 면토지개혁실행위원회의 구성

성별		출신성분		연령		소속	
남	60	고농	2	10대	5	노동당	15
여	14	빈농	52	20대	38	농맹	14
		중농	16	30대	16	인민위원회	17
		기타	4	40대	14	민청	14
						여맹	14

출전: 보은군 선거지도위원회, 『선거사업계획서』로부터 작성.

비고: 위원 1명 나이 미상.

〈표 11〉 보은군 농촌위원회 위원구성

연령		사회성분		출신성분		연령	
남	1,116	고농	54	고농	17	10대	8
여	2	빈농	1,043	빈농	1,072	20대	173
		중농	16	소농	6	30대	434
		노동	21	중농	22	40대	745
				노동	1	50대 이상	130

출전: 『회남면 농촌위원회 조직 명단』(회남면 토지개혁 실행위원회)에서 작성.

비고: 위원 17명 나이 미상.

<표 10>은 구성된 11개 면의 토지개혁실행위원회 위원 74명의 개인별 성향을 성별, 출신별, 연령별, 소속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표 11>은 보은군 173개리의 리 농촌위원회의 위원 1,118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농촌위원회에는 여성이 거의 없지만, 면실행위원회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맹위원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출신별로는 빈농이 압도적이었는데, 면실행위원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농출신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면실행위원회에서는 50대 이상의 위원이 없는 등 구성이 매우 젊은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표 12〉 보은군 북한 토지개혁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수 및 그 소속

(단위: 개, 인)

		개수	당선위원수			소속					
			계	남	녀	노동당	직맹	민청	농맹	여맹	무소속
위원	회남(리)	18	106	87	19	16		28	16	19	27
	회남면	1	19	16	3	11		3			5
	보은(리)	173	964	814	150	243	2	266	165	88	200
	보은(면)	11	219	181	38	108		29	23	24	35
	보은군	1	37	29	8	13	1	10	5	8	
주석단	회남(리)	18	90	72	18	10		11	18	18	33
	회남면	1	7	5	2	6				1	
	보은(리)	173	865	725	140	230	1	212	158	117	147
	보은(면)	11	77	66	11	43	2	16	7	5	4
	보은군	1	7	6	1	5		1			1
면군	보은(리)	173	874	705	169	365		197	216	83	13
대표	보은(면)	11	145	118	27	81		27	17	19	1
합계		554	3,188	2,644	544	1,088	6	758	591	344	399

출전: 보은군 선거지도위원회, 『선거사업계획서』.

비고: 회남(리) 및 회남면 위원수는 중복 계산되므로 합계에서는 제외됨.

<표 12>에는 보은군에서 실시한 북한 토지개혁과 관련된 농촌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농민총회의 주석단, 면대회 및 군대회에 참석할 대표단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다. 관련 위원회는 554개에 총 3,188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보은군 인구를 8만5천여 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약 4%에 달하는 인원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셈이다. <표 9>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한 호 인구를 5인으로 가정하고 한 호에서 1인의 대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전체 보은군 호수의 20%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을 강행하기 위해서 북한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선전·선동에 다수의 면민을 동원하여 추진을 독려·강제하였

다. <표 13>은 각종 선전·선동 행사에 참여한 회남면민은 연인원 6,215명이었다. 회남면 인구가 6천여 명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인력동원이 아닐 수 없다.

〈표 13〉 회남면에서 토지개혁 실시를 위해 조직된 선전선동에 참여한 리별 인원⁵¹⁾

리	군중대회			좌담회			개별방문			집회해설			직관물	
	회수	선전원	참가자	회수	선전원	참가자	회수	선전원	참가자	회수	선전원	참가자	표어	포스터
용호	1	1	181	3	10	60	5	5	18	2	2	40	50	
신곡	1	1	308	3	3	50	6	8	25	1	1	30	155	1
노성	1	1	113	3	1	43	5	5	15	1	1	43	100	
은운	1	1	120	2	1	30	4	4	11	1	1	25	90	
판장	1	1	249	3	2	185	7	8	23	2	2	90	85	
사탄	1	1	88	5	5	405	5	7	12	1	1	67	230	1
송포	1	1	54	4	3	71	3	4	21	2	2	45	80	
서탄	1	1	118	5	6	310	5	5	14	2	2	70	72	
산수	1	1	139	4	1	420	4	4	12	1	1	70	55	
남대문	1	1	129	2	1	30	4	5	16	1	1	20	19	
분저	1	1	111	3	2	60	8	8	19	2	2	40	11	2
신추	1	1	58	2	2	36	3	4	15	1	2	30	30	
사읍	1	1	228	1	1	60	8	8	27	2	2	40	30	
매산	1	1	84	3	2	40	6	7	21	1	1	35	74	
금곡	1	1	176	2	2	115	4	5	18	1	1	60	75	
거교	1	1	264	6	4	150	5	5	17	1	1	70	300	
조곡	1	1	164	2	2	130	5	5	19	2	2	80	160	
법수	1	1	157	2	2	50	6	7	21	1	1	50	60	
계	18	18	2,741	55	50	2,245	93	104	324	25	26	905	1,676	4

원래 계획했던 26일에는 맞추지 못했지만, 보은군 토지개혁사업은 8월 29일에 일정이 종료되었다. 1950년 8월 29일 보은군 토지개혁실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통과된 보은군 토지개혁사업 총화보고서를 보면 8월 중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보은

51) 회남면토지개혁실행위원회, 토지개혁선전선동사업통계, 1950.8.22. 노획문서철, 『토지개혁 조직 지도원 및 선전원 조직 통계 보고』, 2면.

군 토지개혁과정을 알 수 있다.⁵²⁾ 8월 11일 조선노동당 보은군당부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의 참석 하에 보은군 토지개혁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군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다른 위원 3인은 농맹위원장, 민청위원장, 여맹위원장이 맡았다. 8월 12~15일간은 사업 지도를 위한 지도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16일부터 각 면에 파견하였다. 각 면에 파견된 지도원들은 16일부터 토지개혁실행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회남면의 경우도 군 실행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면당 책임자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급 산하 단체의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⁵³⁾ 8월 18일 토지개혁의 최하부 단위인 리 단위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보은군 전체로 173개였다. 각 리에 조직지도원 및 선전원을 1~3명씩 배치하였는데 조직지도원은 500여 명, 선전원은 223명이었다. 이들의 지휘 아래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이를 후인 8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22일까지 토지분여안을 작성하였으며, 각급 농민총회에서 토론을 거친 후 면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과정은 8월 23일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29일 군농민총회에서는 사업 통계보고와 함께 토지개혁을 승인하였다.⁵⁴⁾

52) 노획문서철, 회남면 농촌위원회 조직 명단, 회남면 토지개혁 실행위원회.

53) 회남면 토지개혁 실행위원회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현 직책을 기록하여 자산가를 배제하려 하였다. 실제로 이들 모두는 『토지대장』 등록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소유 토지가 없었다.

직명	연령	성별	출신성분	사회성분	현직
위원장	23	남	빈농	사무원	면당책
부위원장	26	남	빈농	농업	면인위
위원	42	남	빈농	농업	농위
위원	23	남	빈농	소시민	민청
위원	18	여	빈농	농업	여맹

54) 급박하게 토지개혁을 진행한 것은 불리한 전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포함된 다음 구절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군면 실행위원회는 금번 토지개혁 사업에 있어서 가장 낙후한 고리를 차지한 선전사업을 올해 농민들 가운데 침투시킴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인민정권 주위에 더욱 집결시키도록 투쟁할 것이다.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토지의 주인이 된 빈농민들로 하여금 인민정권의 올바른 시책을 높이 받들어 우리 강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하루 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총결기하며 인민군대원호사업과 노력동원사업에 열성적으로 동원케 하며, 솔선하여 의용군으로 참가토록 할 것이다.”

〈표 14〉 몰수 토지 유형별 면적

(단위: 정보)

구분	전	답	기타	계
미국 사용 토지	0.7	0.7	0.0	1.4
남한정부 소유지	50.9	24.9	12.1	87.9
회사 및 상사 토지	0.2	0.4	0.6	1.2
종교단체 토지	69.4	56.5	0.0	125.9
학교 토지	4.5	2.2	0.0	6.7
5정보이상 지주 소작지	36.7	75.6	1.3	113.7
계속적으로 소작 준 토지	1,302.5	964.9	20.0	2,287.4
계	1,464.9	1,125.3	34.1	2,624.2

출전: 「보은군 토지개혁사업 총화보고서」

이제 몰수한 토지의 내역을 살펴보자. <표 14>를 보면 정부 소유 토지, 회사·종교 단체·학교 등 농민이 아닌 단체의 소유 토지가 몰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작지와 계속 소작을 준 토지도 모두 포함되었다. 몰수 토지는 모두 2,624.2정보였으며, 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속 소작을 준 토지로서 2,287.4정보(87.2%)였다.⁵⁵⁾

<표 15>는 몰수한 토지의 분배상황을 농민들의 토지소유상황과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여 받은 농민은 총 7,053호인데, 토지 적은 농민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 없는 농민과 고용농민이 각각 25.7%, 6.7%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빈농층에게 유리하게 토지가 배분되었으며, 회남면의 경우는 고용호 13호, 토지 없는 농민 188호, 토지 적은 농민 464호 등 총 571호였다. 이 면적은 Ⅱ절에서 언급한 수치와 차이를 보이는데,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치가 변했기 때문이다.⁵⁶⁾

55) 노획문서철, 『토지개혁 조직 지도원 및 선전원 조직 통계 보고』, 4면. 보은군 토지개혁실행위원회 위원장 김○○가 8월 25일 충북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보은군에서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작준 지주는 10호인데, 그중 5호는 피난을 갔기 때문에 모두 몰수되었고, 피난하지 않은 지주 중 1호는 토지를 전부 몰수당했고, 4호는 일부만 몰수당하였다. 도주한 자의 몰수 토지는 43정보에 달하였다.

56) 8월 29일 개최된 「보은군 토지개혁사업 총화보고서」에서는 추진 과제로 “각면 실행위원회와 농촌 위원회에서는 비치할 문건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문건을 구비할 것이며 통계상에서 나타난 착오점

〈표 15〉 농민 소유형태별 토지 분여 상황

(단위: 정보, 호)

토지소유형태	전	답	기타	계	호수
고용농민	76.1	71.5	0.1	147.7	473
토지 없는 농민	452.6	404.9	3.2	860.6	1,812
토지 적은 농민	923.1	652.9	13.7	1,589.8	4,768
국유화			26.2	26.2	
계	1,451.8	1,129.3	43.1	2,624.2	7,053

출전: 「보은군 토지개혁사업 총화보고서」

〈표 16〉 토지개혁 실시 후의 토지개혁 상황

(단위: 호)

	5단보 미만	5~10	10~20	20~30	30~50	계
보은	936	755	306	44	2	2,043
마로	582	554	237	20		1,393
탄부	370	529	336	68	11	1,314
산외	253	513	255	31	3	1,055
외속리	196	254	101	13		564
내속리	207	295	83	4		589
회남	287	371	321	22		1,001
회북	471	621	308	27	1	1,428
내북	627	527	460	51	5	1,670
삼승	352	604	223	40	2	1,221
수한	213	459	262	15	1	950
계	4,494	5,482	2,892	335	25	13,228

출전: 토지개혁 조직 지도원 및 선전원 조직 통계 보고

<표 16>은 토지개혁 실시 후의 토지소유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보은군 총농가 중 5정보 이상 소유한 농가는 없으며, 1정보 미만의 토지소유 농가가 전체의 75.4%를

을 정확히 시정하는 동시에 군실행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였다. 3정보 이상을 소유한 농가도 25호에 불과할 정도로 토지개혁 후의 토지소유규모는 영세한 상황이었다. 회남면의 경우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조차 없었다. <표 16>의 농가호수를 <표 9>의 보은군 전체호수 통계와 비교할 때 보은군 전체 농가를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단보 미만의 농가에는 토지 없는 농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토지 없는 농민을 포함한 5단보 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1/3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소유구조의 불평등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리 단위 실행조직인 농지위원회와 농촌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남한의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하유식의 연구들이 독보적이다. 면 농지위원회는 지주층과 소작인층이 반반으로 구성하게 했지만, 이농지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제한은 없었다. 울주군 상북면의 경우 소작관련 농가가 많았으며, 농지위원은 형식적인 자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농지개혁 진행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보조하는 주요한 ‘파트너’로서, 더 나아가 농지개혁 추진의 일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아 활동”한 것으로 평가했다.⁵⁷⁾ 또한 울산군의 농지향고사건의 처리과정을 분석하면서 위원들이 자신의 계급·계층적 특성보다는 “지주의 경작 노력과 생계 문제를 고려한 농지위원회와 소작인의 양보와 화해 등과 같은 ‘도의적 판단’이 결정 이유의 핵심 근거”⁵⁸⁾로 삼았다고 보았다.

북한 토지개혁의 농촌위원회는 북한지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과 동일한 구성과 임무를 가졌다.⁵⁹⁾ 농촌위원회는 농지위원회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

57) 하유식, 앞의 2008의 논문, 118면. 정상욱·김석준은 장유면 사례분석에서 면농지위원중 피분배지주는 지주전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몰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정상욱·김석준,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장유면 농지개혁의 실태」,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69~418면).

58) 하유식, 「농지개혁기 울산군 농지위원회의 농지향고사건 심사 결정에 대한 연구」, 『역사와경계』 85, 부산경남사학회, 2012, 249면.

59) 농촌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 제8조이 규정되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개동(리)에 농촌위원회를 조직한다. 농촌위원회는 고용농민, 토지 적은 농민, 토지 없는 농민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5~9명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농촌위원회는 자기 동(리)내의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제2조에 해당하는 몰수대상 토지를 조사통계하고 토지분여안을 작성하고 총회를 통과한 후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여를 실시한다.”

째, 자기 동리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몰수대상 토지를 조사에서부터 분여에 이르는 실무를 추진하는 실행조직이었다. 둘째, 농촌위원회는 “고용농민, 토지 적은 농민, 토지 없는 농민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5~9명의 성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중농 이상의 농민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배제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해당 시·면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⁶⁰⁾ 면 실행위원회는 5명으로 하되 면 노동당위원장, 면 인민위원장, 면 민청위원장, 면 여맹위원장, 면 농맹위원장으로 구성했다.⁶¹⁾

〈표 17〉 보은군 농촌위원의 소유규모와 경작규모

규모	소유면적		경작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0.5	912	295,450	705	479,672
0.5~1	113	223,919	290	586,132
1~2	17	61,247	45	161,846
2~3			2	14,509
합계	1,042	580,616	1,042	1,242,159
평균		557		1,192

자료: 노획문서, 『보은군 농촌위원회 위원명단』에서 작성.

보은군 농촌위원회는 173개가 조직되었는데, 위원 수는 5~7인이었으며 <표 11>에서 본 것처럼 총 1,118명이 있었다. 노획문서철의 『보은군 농촌위원회 위원명단』에는 소유규모와 경작규모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내속리면 76인의 경우는 소유규모와 경작규모가 보고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고, 나머지 1,042명의 소유규모와 경작규모 정리한 것이 <표 17>이다. 평균소유규모는 557평이며, 경작면적은 1,192평이다. 『토

60)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이다. 제15조에는 농촌위원회의 임무로서 몰수토지목록과 면적 확정, 농민의 경지현황 및 점수제 관련 통계 작성, 귀속농지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할 것, 토지분여안을 작성하여 농민총회에 의결을 구할 것, 시·면 인민위원회의 승인으로 거쳐 토지분여를 실시할 것, 소유권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갖추어 시·면 인민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61) 위원장은 면당위원장이 맡으며, 조직부장에는 면인민위원장, 선전부장은 면당선전지도원이 맡았다. 농림성 남토개조 제 호 → 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제반 조직에 관하여」, 『충북도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호-토지개혁사업 실행에 관하여』.

지대장』으로부터 계산한 1949년 말 현재 회남면 토지소유자는 1,840명이었는데, 평균소유면적은 1,577평이었다. 보은군 농촌위원회의 평균 소유면적은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회남면 농촌위원회 위원 110명의 평균소유면적은 524평이고, 평균 경작면적은 1,138평이었다. 회남면은 보은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농촌위원회 위원들의 경제적 상황은 남한 농지개혁의 농지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농지위원회의 구성은 지주대표와 소작인대표 반반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하유식은 울산 상북면의 사례에서 “지주의 참여가 아주 적었고 대부분 소작농, 자소작농으로 구성”⁶²⁾되고, 이는 기존 사례연구들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한편 면농지위원회 위원의 평균소유면적은 5,331평이었으며, 리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평균 1,098평을 분배받았다고 한다.⁶³⁾ 일부 지역사례이긴 하지만, 회남면 농지위원들에 비해 분배면적이나 소유면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농촌위원회 중농이상의 농가가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빈농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우리는 회남면에서 진행된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을 살펴보았다. 피점령지의 토지개혁은 점령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쟁 중이라는 상황과 인력 부족 등도 원인이겠지만, 계획 자체가 촉박했던 탓도 있다. 이 때문에 선전·선동을 통한 인력동원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하였고, 시행과정의 정확성보다는 사업 종료가 목적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피점령지의 북한 토지계획은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종결되었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인력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북한은 토지개혁 완수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남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전쟁 시작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전시상황이라도 이러한 급속한 진행과정과 분여결과에 대해 불만이 없지는 없었다. 충북 인민위원회는 1950년 8월 10일 여론조사망을 조직하여 각지의

62) 하유식, 「농지개혁기 울주군 상북면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세계』 33, 호원사학회, 2008, 120면.

63) 하유식, 앞의 2008 논문, 119면.

여론을 있는 그대로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자소작농이 소작지를 뺏기거나, 소작인이 점수제에 의거 소작지를 뺏기는 경우는 불합리하며, 고용인에게도 토지를 분배해야겠지만, 그럴 경우 분배농지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았다.⁶⁴⁾ 특히 자신의 소작지가 다른 사람에게 분여되거나, 심지어 자신의 자작지도 분여된 농가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그리고 이것은 점수제를 채택하였을 때 감수해야 할 필연적인 한계이었다.

가. ‘농가1’

토지분여증명서

1. 분여받은농민의주소소재지
충청북도보은군회남면온우리

2. 분여받은토지의목록

필지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본리	본리	1283	3칸	95
1	4 4 4	1281	1	222
2	4 4 4	1273	65	292
3	4 4 4	1285	32	616
4	4 4 4	1351	1	351

이상과하며 토지분여
본증명서본주수토지소유권증명서의외환함
1980년 9월 9일
보은군인민위원회장

나. ‘농가2’

토지분여증명서

1. 분여받은농민의주소소재지
충청북도보은군회남면온우리

2. 분여받은토지의목록

필지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본리	본리	34	3칸	83
1	4 4 4	41	4	100
2	4 4 4	51	4	100
3	4 4 4	107	4	623
4	4 4 4	131	4	200
5	4 4 4	267	4	200

이상과하며 토지분여
본증명서본주수토지소유권증명서의외환함
1980년 9월 10일
보은군인민위원회장

자료: 회남면 『토지분여증명서』

〈그림 5〉 『토지분여증명서』 사례

IV. 북한 토지개혁의 農地分與와 남한 농지개혁의 農地分配 비교

회남면에서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의 필지별 내용은 『토지분여증명서』로부터 알 수 있다. 『토지분여증명서』는 분여 받은 토지의 목록을 농민별로 정리한 것으로 발행

64) 충북인위 위원장 리민용, 「반영수집 및 여론조사망 조직에 대하여」(8.5) 8.10 접수.

65) 앞서 언급한 8월 29일 개최된 「보은군 토지개혁사업 총화보고서」의 또 다른 추진 과제로 “군면 실행위원회에서는 토지개혁 사업에서 나타난 부정몰수, 부정분여를 급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며 누락 여하를 재조사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을 명시한 것은 당시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자는 보은군 인민위원장이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분여 받은 농민의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토지목록을 기록하였다. “본 증명서는 추후 토지소유권증명서와 교환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회남면의 경우는 1950년 9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모두 발급되었다. 이처럼 서둘러 『토지분여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분여를 기정사실화하여 農心을 사로잡기 위함이었다. 『토지분여증명서』는 자작지도 포함해서 발급되었는데, 이는 점수제에 근거하여 농가별 경작면적을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Ⅱ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수배농가와 ‘남한’ 수배농가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토지분여증명서』를 『토지대장』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토지분여증명서』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5>는 두 종류의 『토지분여증명서』를 예시로 보여준다. ‘농가1’은 5필지를 분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위 4필지는 ‘『상환대장』-『토지분여증명서』-『분배농지부』’(이하 ‘남한1-북한-남한2’라고 한다)에 모두 ‘농가1’이 수배농가였다. ‘농가1’은 1937년 처음으로 경지 111평을 소유하기 시작했다가, 1956년에 1504평으로 소유지가 늘어났다. 농지개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결과였다. 마지막 1필지는 ‘남한1-북한’ 계열에서는 ‘농가1’이 수배농가였지만, ‘남한2’에서는 다른 사람이 수배농가였다. 즉 ‘농가1’은 북한 토지개혁을 거치면서 1필지의 농지가 다른 사람에게 분배된 것이었다. 한편 ‘농가2’의 경우는 6필지 모두 농지개혁과는 무관하며, 북한 토지개혁에 의해 분여된 필지였다. 즉 ‘농가2’는 토지 없는 雇農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농지개혁과는 무관했지만 1964년 『토지대장』에는 자기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간단히 두 농가의 사례를 들었지만, 농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농지분배를 경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분여증명서』의 기재 양식과 내용을 보면 짐작되는 바지만,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림 5>의 ‘농가1’은 그나마 지적 정보가 정확한 편이지만, <농가 2>의 경우는 백단위로만 면적이 제시된 필지가 4개로, 지번에 따른 지적정보조차 대조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대장』상의 지번과 『토지분여증명서』의 지번을 대조해보면,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사탄리, 서탄리, 송포리, 은운리 등은 잘 일치하는 반면, 조곡리, 판장리 등은 일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성명의 기록에서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실명과 다른 경우가 많다.⁶⁶⁾

〈표 18〉 『토지분여증명서』 유무 및 분여대상지별 지목별 현황

구분	분여증명서		전	답	대	기타	합계
필지수	없음		1,421	587	1		2,009
	있음	자작지	360	259	9		628
		분여지	2,204	1,148	131	46	3,529
	합계		3,985	1,994	141	46	6,166
소유지 면적	없음		185.2	56.4	0.0		241.6
	있음	자작지	79.9	39	1.0		119.9
		분여지	391.5	145.4	13.5	5	555.3
	합계		656.6	240.8	14.5	5	916.8
경작지 면적	없음		188.7	56.6	0.4		245.7
	있음	자작지	71.6	37.7	0.9		110.2
		분여지	343.1	135	11.7	4.1	493.9
	합계		603.4	229.2	13	4.1	849.8

자료: 『토지대장』, 『토지분여증명서』.

따라서 1949년 『토지대장』상의 지번별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기준으로 『토지분여증명서』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수정작업을 했다.⁶⁷⁾ 이렇게 수정된 『토지분여증명서』와 『토지대장』을 결합하고, 공유지를 소유자별로 분할하고, 한 필지에 2명 이상의 분여자가 있는 경우도 면적별 배분한 후, 『수정분배농지부』와 연결하였다. 지목은 『토지대장』상의 전답에 한정하되, 『토지분여증명서』에 등장하는 필지는 포함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에서는 대지도 분배대상에 포함되었고, 현 상태에서 경지인 필지도

66) 특히 ‘정’씨 성을 모두 ‘중’으로 쓴다거나 ‘성환’을 ‘승환’으로 쓴 경우가 있어 양자를 대조 후 수정한다. 단 『토지대장』상에 해당 명의인이 없는 경우는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67) 지번정보를 확인하여 삭제 및 수정할 필지를 찾아내 정리하여 4953개의 관내 데이터 중에서 336개는 지번 정보가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고, 분여증명서에 지번이 기록되지 않았고, 면적 정보도 불분명하여 지번을 특정할 수 없는 필지 154개 제외하였다. 1949년 말 기준 『토지대장』상 필지수는 7,241필지인데, 이중 경지는 5,936필지이며, 이를 『토지분여증명서』상의 관내 필지와 대조하면서 정리한다. 한 필지에 지주가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지번별로 면적을 배분하고, 한 필지에 분여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분할하되, 경작면적이 남는 것은 소유주가 자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수정분배농지부』와 연결하여 분필된 필지를 반영하고, 1950년 이후 임야에서 경지로 전환되어 분배농지에 포함된 필지 등을 포함하여 총 6,166개의 지번별 정보를 작성하였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부 기타 지목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정리한 필지에는 크게 세 유형이 존재하는데 첫째, 『토지대장』의 경지임에도 『토지분여증명서』가 없는 경우이다. <표 18>을 보면, 총 6,166필지 중에서 2,009필지(32.6%)에 대해서는 『토지분여증명서』에 해당 필지가 기록되지 않았다. 회남면의 경우에는 전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면서 자작지로서 몰수대상 토지가 없으면서 분여 받는 경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분여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토지분여증명서』에 있는 필지인데,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이다. 이는 <그림 2>에서 “토지개혁 이전의 소유토지로서 현재에도 소유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628필지(10.2%)였다. 셋째, 몰수된 토지를 분여 받은 경우이다. 이는 <그림 2>의 “토지개혁 정령에 의하여 분여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3,529필지(57.2%)였다. 회남면의 경우 전체 경지 중에서 절반 이상의 필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수배농가 변화

	전매매		전	답	기타	합계
필지수	없음	남한1=북한=남한2	91	64	0	155
		남한1=남한2 ≠ 북한	78	52	3	133
	있음	남한1=북한 ≠ 남한2	17	6	0	23
		남한1 ≠ 북한 ≠ 남한2	20	27	0	47
	합계		206	149	3	358
소유지면적	없음	남한1=북한=남한2	13.72	7.3		21.01
		남한1=남한2 ≠ 북한	16.47	6.5	0.15	23.12
	있음	남한1=북한 ≠ 남한2	2.35	0.38		2.73
		남한1 ≠ 북한 ≠ 남한2	2.87	3		5.88
	합계		35.4	17.19	0.15	52.74
경작지면적	없음	남한1=북한=남한2	13.56	7.3		20.86
		남한1=남한2 ≠ 북한	12.12	6.56	0.34	19.01
	있음	남한1=북한 ≠ 남한2	2.59	0.69		3.27
		남한1 ≠ 북한 ≠ 남한2	2.56	2.87		5.43
	합계		30.83	17.41	0.34	48.58

자료: 『수정분배농지부』, 『토지대장』, 『토지분여증명서』.

<표 18>에는 이 세 유형의 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과 경작자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1949년 말 현재 『토지대장』에 기록된 사람이며, 경작자란 『토지분여증명서』상의 이름을 기준으로 한 ‘북한’ 수배농가를 의미한다. 소유자의 면적과 경작지의 면적이 다른 것은 共有地나 分割耕作地를 분필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자경하는 것으로 분류한 필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⁶⁸⁾ 소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분여지의 면적 555.3정보는 북한의 피점령지 토지개혁으로 토지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필지라 할 수 있는데, 전체 경지의 60.6%였다. 한편 경작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분여지의 면적은 493.9정보였는데, 이는 전체 경작지 면적의 58.1%였다. 소유권 변동을 의미하는 60.6%의 경우는 地主自耕의 가능성 때문에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회남면 농지의 절반 이상에서 종래 경작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경작자의 변동이 있었음은 확실하다. 이는 회남면에서 실시된 남한 농지개혁의 분배면적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격단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남한1-북한-남한2’로 이어지는 변화과정에서 수배농가의 변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자. <표 19>는 남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필지와 북한 토지개혁에서 토지를 분여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남한 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였던 404필지 중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여대상 토지가 된 것은 358필지(88.7%)였다. 한편 전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한 분배농지 중 북한토지개혁에서도 동일인이었던 필지는 155필지(43.3%)였는데, 이 필지들은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 그리고 남한에서 진행되는 전매매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같은 사람이 수배농가였던 필지이다. 반면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변화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수배농가에게 되돌아간 필지도 133필지(37.2%)로 적지 않다. 정치적인 격동을 겪으면서도 43.3%의 필지에는 수배농가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7.3%의 필지에서는 북한 토지개혁으

(68) 이는 『토지분여증명서』의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거교리 166번지는 『토지분여증명서』에는 경작면적이 300평으로 기재되었지만, 『토지대장』의 면적은 1,542평이었다. 차이가 나는 면적 1,242평에 대해서는 다른 분여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분여자의 경작지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여지의 경우 경작지 면적보다 소유지 면적이 더 컸다. 『토지분여증명서』가 없는 필지의 경작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수정분배농지부』에 기록된 필지들 중에는 1950년 이후 분배농지로 편입된 필지들이나 분배농지의 면적이 변한 필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로 수배농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남한 농지개혁에서 원래 수배농가에게 돌아갔다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수치이다. 이 사례만으로는 정치적 동기의 개입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차이가 점수제 적용 여부와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남한 농지개혁에서 점수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남면 필지 전반에 걸친 소유자 변화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진행된 북한 토지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 토지개혁과 종착점은 「토지소유권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전황이 불리해지는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토지소유권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신속한 증명서 발급은 당시 불리한 戰況을 극복하고 농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증명서」를 시급하게 농민들에 발급해 주는 것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민심을 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보은군에서는 「토지소유권증명서」 양식이 도작하지 않자, 「토지분여증명서」라는 양식을 등사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증서를 발급해야만 했던 북한의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그 역사적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같은 지역에서 진행된 남한의 농지개혁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회남면의 경우 1949년 말 현재 경지 5,937필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진 농지는 404필지로 전체 경지의 6.8%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배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음에도 소유규모의 불평등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는데 사전방매의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75필지(18.6%), 4.3정보(17.0%)로 다른 시도에 비하면 낮았으며, 원수배농가와 현경작자의 경제적 지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전매매를 통해 토지를 많이 보유하였거나 적게 보유한 그룹에게 유리하게 분배농지가 이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미였다. 상환실적의 측면에서는 타 지역사례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데, 상환실적이 초기에는 부진하였다가, 1954년에는 타 지역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는 점이

었다.

한편 회남면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보은군 토지 개혁과정을 보면 8월 11일 보은군 토지개혁실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16일부터 면단 위 토지개혁실행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8일에는 토지개혁의 最下部 단위인 리 단위의 농촌위원회가 173개리 전체에 조직되었다. 각 리에 파견된 조직지도원 및 선전원의 지휘 아래 농촌위원회는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22일까지 토지분여안을 작성하고 농민총회에서 확정했다. 토지분여안은 면인민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29일 군농민 총회에서는 사업 통계보고와 함께 토지개혁을 승인하였다. 원래 계획했던 26일보다는 늦은 것이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전격적인 실시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 짧은 기간에 조직된 위원회는 554개로, 총 3,188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각종 선전·선동 행사에 참여한 회남면민은 연인원 6,215명이었다. 회남면 인구가 6천여 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인력동원이었다.

농촌위원회의 위원은 남한 농지개혁 농지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경제적 사정은 더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남면 농촌위원회 위원은 110명으로 평균소유면적은 524평이고, 평균 경작면적은 1,138평이었는데, 이는 울산 상북면 농지위원회 위원의 수배면적 정도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남한 농지위원회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은 농촌위원회에 중농이상의 농가가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빈농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피점령지의 토지개혁은 점령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았다. 전쟁 중이라는 상황과 인력 부족 등도 원인이었지만, 계획 자체가 촉박했던 탓도 있다. 이 때문에 선전·선동을 통한 인력동원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하였고, 시행과정의 정확성보다는 사업 종료가 목적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피점령지의 북한 토지개혁은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종결되었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인력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북한은 토지개혁 완수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남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전쟁 시작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및 『토지분여증명서』를 연결하여 필지별 경작자 정보를 담고 있는 총 6,166필지의 경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중 3,529필지(57.2%)에서 소유자가 바뀌

었으며, 소유지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경지의 60.5%인 555.3정보였다. 특히 자신의 소작지가 다른 사람에게 분여되거나, 심지어 자신의 자작지도 분여된 농가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점수제에 따른 토지분여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남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필지 중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여대상 토지가 된 것은 358필지였다. 전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한 분배농지 중 북한토지개혁에서도 동일인이었던 필지는 155필지(43.3%)였는데, 이 필지들은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 그리고 남한에서 진행되는 전매매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같은 사람이 수배 농가였던 필지이다. 반면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변화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수배농가에게 되돌아간 필지도 133필지(37.2%)로 적지 않다. 정치적인 격동을 겪으면서도 43.3%의 필지에는 수배농가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7.3%의 필지에서는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남한 농지개혁에서 원래 수배농가에게 돌아갔다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수치이다. 이 사례만으로는 정치적 동기의 개입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차이가 점수제 적용 여부와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남한 농지개혁에서 점수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지역은 남한의 경우 분배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반면,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배대상에 포함된 필지가 절반에 이른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전제가 되는 ‘북한’ 토지개혁의 수배농가와 ‘남한’ 토지개혁의 수배농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은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회남면 『土地臺帳』, 『償還臺帳』, 『分配農地簿』, 『農地分配調書』
회남면 『土地分與證明書』(북한 작성)
미군 鹵獲文書綴 회남면 관련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3, 1984
- 강정구, 『좌절된 사회혁명』, 열음, 1989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북한의 역사 제2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홍성찬,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1992
- 강정구,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 민족주체적 시각에서」, 『경제와사회』 7, 비판사회학회, 1990
기광서,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김성보, 「해방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동방학지』 7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_____, 「북한의 토지개혁(1946년)과 농촌계층구성변화-결정과정과 지역사례」, 『동방학지』 8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5
김운근·이두순, 「수복지구에 있어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김운근·김두순, 「수복지구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본 북한토지개혁의 재평가」, 『농촌경제연구』 31, 한국농업경제학회, 1990
김재웅,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제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 『역사와현실』 75, 한국역사연구회, 2010
김태우,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토지개혁」, 『역사비평』 70, 역사비평사, 2005
류기전, 「농지개혁과 토지소유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충남 연기군 남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사학』 14, 경제사학회, 1990
- 박명림, 「북한혁명의 성격: 반정복과 반혁명-북한토지개혁의 과정·내용·의미 분석」, 『아세아 연구』 97,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7
- 박석두, 「농지개혁과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경주 李氏家の 토지경영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1, 경제사학회, 1987
- 박찬승, 「한국전쟁기 함덕면 마을 주민간의 갈등」, 『사회와역사』 74, 한국사회사학회, 2007
- 오보경,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역 토지개혁-경기도 화성군 안용면 안령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3
- 이용기, 「한국농지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혈연적 관계망에 주목하여」, 유용태 편, 『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이주철, 「토지개혁 이후 북한 농촌사회의 변화-1946~1948년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 이지수, 「해방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 문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이현주, 「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 점령하의 서울-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1, 서울학연구소, 2008
-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 『경제사학』 8, 경제사학회, 1984
- _____,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 『경제사학』 9, 경제사학회, 1985
- _____,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과정의 특질」,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 _____,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제발전연구』 6-1, 한국경제발전학회, 2000
-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대구사학』 68, 대구사학회, 2002
- 정병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과 지방사회의 변화-경기도 시흥군의 사례」,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 정상옥·김석준,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장유면 농지개혁의 실태」,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정승진, 「20세기 전반 전통 농촌지역의 사회변동 양상-전남 나주군 다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 _____, 「장기사의 관점에서 본 나주의 농지개혁-전남 나주군 금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정승진·松本武祝,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1970)」, 『한국경제연구』 17, 한국경제연구학회, 2006
- 조석곤,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의 변화-예천군 용문면 사례의 예비분석」,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 _____,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김제시 죽산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65, 박영출판사, 2005a
- _____,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농촌경제』 2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b
- _____, 「농지개혁 당시 수배농가의 토지소유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경제사학』 48, 경제사학회, 2009
- _____,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지주·농민의 입장-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 _____,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시흥군 수암면 사례」, 『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 하유식, 「농지개혁기 울주군 상북면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세계』 33, 호원사학회, 2008
- _____, 「울산군 상북면의 농지개혁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농지개혁기 울산군 농지위원회의 농지향고사건 심사 결정에 대한 연구」, 『역사와세계』 85, 부산경남사학회, 2012
- 하유식·이종봉, 「농지개혁 전 울산군 웅촌면의 토지소유권 변동 연구」, 『대구사학』 123, 대구사학회, 2016
- 한모니까,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영토점령과 제도이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 _____, 「한국전쟁기 남한(유엔군)·북한의 ‘점령통치’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제언」, 『역사와현실』 84, 한국역사연구원, 2012
- Cho, Seokgon,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13

A Study on Land Reform in the Occupied Areas by North Korea — A Case of Hoenam, Boeun-gun

Cho, Seok-gon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South Korea's land reform in the regions occupi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irst, in Hoenam-myeon, the final distributed arable land was 404 parcels out of 5,937 parcels at the end of 1949, accounting for only 6.8% of the total arable land. The parcels sold for de facto sale were 75 parcels (18.6%) and 4.3 hectare (17.0%), which were much lower than other district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land reform in Hoenam was very fast. On August 11, the Boeun-gun Land Reform Executive Committee was organized, and on 18th, village land committees were organized at all villages. The land share plan, which was finalized at the peasants congress, was approved by the District Peasant Assembly on the 29th. There were 554 committees organized in this short period, with a total of 3,188 members. The Hoenam number who participated in various propaganda and agitation events was 6,215, more than the population of Hoenam at that time.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members of the village land committees was worse than the members of the South Korea's land reform.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land reform in North Korea, a list of 6,166 parcels was prepared on various documents. The owners of 3,529 parcels (57.2%) were changed, and the area of the parcels was 555.3 hectare, which is 60.5% of the total land. Of the 404 parcel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358 parcels became the distributed land parcels for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Of these, 43.3% of the plots had no change in the distributed peasants, while 37.3% of them had been changed by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returned to the original the distributed peasants in South Korea's land reform. The implications of this require further study.

Key Words : Land reform in South Korea, Land reform in the Occupied Area, de facto land sales, distributed peasant, Village Land Committee